

지속가능개(발)전목표(SDGs)와 인권기반접근

2017년 12월 13일

이성훈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alee7080@gmail.com

주요 내용

I. 들어가면서

II.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인권

1. SDGs 정의와 내용
2. 유엔 2030 의제 문서에 언급된 인권
3. SDGs와 인권의 연계
4. SDGs에 대한 인권관점에서의 평가

III. 인권기반접근(HRBA) 개발협력

1. 인권기반접근(HRBA)의 정의와 개념
2. 인권기반접근(HRBA)의 특성
3. 인권기반접근(HRBA) 실행원칙: PANEL

IV.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과 인권 연계

1. 이행 단계에 따른 인권 연계 방식
2. 목표에 따른 인권 연계 방식
3. 이행 주체에 따른 인권 연계 방식

V. 전망

개(발)전-환경-인권의 만남

시기	개(발)전	환경	인권
1940-1980	개발년대(1960s-) UNCTAD (1964) UNDP (1965)	유엔 인간환경국제회의 (UNCHE) (1972) UNEP (1972)	세계인권선언(1948) 국제인권조약(1965-) 유엔 인권 특별절차 (1980-)
1990s	인간개(발)전보고서 (HDR) (1991-)	유엔 환경과 개발 국제회의 (UNCED) (1992) - 의제 21	발전권 선언 (1986)
2000s	새천년개발목표 (MDGs) (2001-2015)	유엔 지속가능개(발)전 정상회의 (WSSD) (2002) 리우+10	인권이사회(2006-) 보편적정례검토 (UPR) (2008-)
2010s	유엔 지속가능발전국제회의(UNCSD) (2012) 리우+20 유엔 2030 의제 / 지속가능개(발)전목표 (SDGs) (2016-2030)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 (UNGPs) (2011)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2015) 농민의 권리 선언

인권기반접근 4.0.

단계	내용
1.0	기관의 개별 사업에 인권기반접근 시범적 적용 (모범 사례)
2.0	기관의 모든 사업에 인권기반접근 전면적 적용 (프레임워크)
3.0	사업 뿐 만 아니라 조직의 경영에도 인권기반접근 적용 ('인권경영' 사례)
4.0	사업 뿐 만 아니라 조직의 경영과 협력기관에도 인권기반접근 적용 ('인권경영'의 법제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깨끗한 물과 위생
모두를 위한 깨끗한 에너지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산업, 혁신, 사회기반 시설	불평등 감소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기후변화와 대응	해양생태계 보존	육상생태계 보호	정의, 평화, 효과적인 제도	지구촌 협력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란 무엇인가?

- SDGs는 2015년 9월 25일 제70차 유엔총회에서 채택한 <UN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에 포함된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목표 의미
 - 국내에서는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지속가능**개발**목표 두 가지 번역어가 동시에 사용되고 있음. 전자는 환경부에서 후자는 외교부에서 개도국에 대한 지원에 주로 의미할 때 사용.
 - SDGs 전체에 대한 한국어 번역은 외교부 비공식 번역본과 시민사회(KoFID) 번역본이 있는데 전자는 개발로 후자는 발전으로 번역.
- SDGs는 과거 유엔의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대체하는 국제사회 공동의 개발/발전 목표로 유엔을 비롯한 모든 국제기구 공동의 정책 프레임워크로 기능
 - 새천년개발목표(MDGs) : 2001-2015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2016-2030

Development 개발 vs. 발전

	개발 (開發)	발전 (發展)
글자 해석	열어 펼치다	펼쳐 넓히다
의미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빈곤퇴치	스스로의 힘으로 빈곤을 극복하고 삶의 질을 높여 나감
특성	구체적	추상적, 일반적
동사	타동사	자동사
용례	국토개발, 경제개발, 재개발, 국제개발협력 위원회 (국개위)	사회발전, 문화발전, '자가발전'
번역 사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새천년개발목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지속가능개발/발전목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함의	SDG는 개도국 의제로 한국은 공여국으로 개도국의 SDGs 이행 지원에 초점	SDG는 한국 등 OECD 국가 포함하는 보편적 의제로 한국도 국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책무를 지님.

SDGs 용어 배경

- SDGs의 명칭은 새천년개발 목표(MDGs)와 리우 환경회의의 두 가지 흐름의 통합에서 비롯됨.
 - 지속가능발전은 1992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 명칭에서
 - Development Goals 은 새천년개발목표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SDGs 명칭은 공식적으로 2012년 지속가능발전국제회의 (리우+20) 결과 문서에서 처음 언급



SDG의 내용

- SDGs는 지속가능발전의 3대 축인 사회발전, 경제발전 및 환경 분야 모두 15개의 목표와 거버넌스 (16번)와 이행수단과 파트너십 (17번)의 5으로 구성.
 - 5Ps :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 SDGs 는 17개의 목표 하에 평균 약 10개 (최소 5, 최대 17개) 모두 169개의 세부목표 (Target)와 232개의 글로벌 차원의 지표 (Indicator)로 구성.

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A/70/L.1) (9.25.2015)

우리의 세계체제 변혁 : 지속가능개발(발전)을 위한 2030 의제

Section	Contents	No of Paragraph	
Preamble 서문	People, Prosperity, Planet, Peace and Partnership 인간, 번영, 지구환경, 평화, 파트너십		
Declaration 선언(1-53)	Introduction 머리말	1-6	
	Our Vision 우리의 비전	7-9	
	Our shared principles and commitments 공통의 원칙과 약속	10-13	
	Our world today 오늘날의 세계	14-17	
	The new agenda 새로운 의제	18-38	
	Means of implementation 이행 수단	39-46	
	Follow-up and review 후속과 검토	47-48	
	A call for action to change our world 세계를 바꾸는 위한 행동 요청	49-53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targets 지속가능개발(발전)목표와 세부목표 (54-59)		54-58	
	SDG 1-15 and Targets 세부목표	59	
	SDG 16 – 10 Targets 세부목표	59	
	SDG 17 Targets 세부목표	59	
	Finance 자원	17.1-17.5	
	Technology 기술	17.6	
	Capacity-building 역량강화	17.9	
	Trade 무역	17.10-17.12	
	Systemic Issues 시스템 이슈	Policy and Institutional Coherence 정책 및 제도적 일관성	17.13-17.15
		Multi-stake holder partnerships 다자간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17.16-17.17
Data, monitoring and accountability 데이터, 모니터링 및 책무성		17.18-17.19	
Means of implementation and the Global Partnership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60-71	
Follow-up and review 후속과 검토 (72-91)		72-77	
	National level 일국적 차원	78-79	
	Regional level 지역적 (대륙) 차원	80-81	
	Global level 글로벌 차원	82-91	

지속가능개(발)전목표 (SDGs)

-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빈곤)
-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한다. (기아)
-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건강)
-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교육)
-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성평등)
-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물)
-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확립한다. (에너지)
-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일자리)
-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산업화와 혁신)
-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도시)
-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소비)
-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행동을 시행한다(기후변화)
-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다. (해양)
-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육상)
-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 확대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거버넌스)
-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이행수단과 글로벌 파트너십)

SDGs에 대한 정의

구분	정의
헌장	사람과 지구를 21세기 헌장 (2030 의제 51항) A charter for people and planet in the 21 st century
의제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의제 (2030 의제 52항) An agenda of the people, by the people and for the people
행동 계획	사람과 지구와 번영을 위한 행동계획 (전문) A plan of action for people, planet and prosperity

SDGs의 특성 – I ACT U

- Inclusive 포용적 – 'Leave no one behind'
- Accountable 책무성 – '자발적' 보고 '의무'
- Comprehensive 종합적 – 사회, 경제, 환경 및 거버넌스 (5 Ps)
- Transformative 체제변환적 – 구조적 문제와 패러다임 전환 시도
- Universal 보편성 –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



SDGs의 의미와 의의

- 지구적 복합위기에 대한 유엔 차원의 포괄적인 정책 대응
- 지속가능발전 의제 이행의 청사진으로 국제와 국내 정책을 일관성있게 연계할 수 있는 가이드
-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기업 및 주요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의 플랫폼과 지침 제공
- 법적 구속력있는 조약(Treaty) 아니지만 정치적 구속력을 지니는 국제적 합의.
- 국제사회 공동의 목표이자 개도국과 선진국의 국제연대 도구

<표 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국제인권기준 연계¹

1

핵심 단어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국제 인권기준 (예시)
1. 빈곤	목표 1. 모든 형태의 빈곤을 모든 지역에서 종식시킨다.	세계인권선언 22, 25, / 사회권 규약
2. 기아	목표 2. 기아를 종식하고, 식량 안보를 확보하며 영양상태를 개선하며 지속가능 농업을 증진한다.	세계인권선언 25, 28 / 사회권 규약 (ICESCR)
3. 건강	목표 3.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고 웰빙(well-being)을 증진한다.	세계인권선언 3, 25, 27, 28 / 사회권 규약
4. 교육	목표 4. 모든 사람을 위한 포용적이고 형평성 있는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를 증진한다.	세계인권선언 26, 28 / 사회권 규약
5. 성평등	목표 5. 성평등 달성 및 여성, 여아의 역량을 강화한다.	세계인권선언 2, 사회권 규약,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아동권리협약(CRC)
6. 물	목표 6. 모든 사람을 위한 식수와 위생시설 접근성 및 지속가능한 관리를 확립한다.	세계인권선언 25 / 사회권 규약 / 물에 대한 권리 선언
7. 에너지	목표 7. 모든 사람을 위한 저렴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현대적인 에너지에의 접근을 확립한다.	세계인권선언 25, 27 / 사회권 규약
8. 일자리	목표 8. 지속적, 포괄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촉진하며 생산적인 완전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를 증진한다.	세계인권선언 4, / 사회권 규약 / ILO 핵심노동기준
9. 산업화	목표 9. 복원력이 있는 인프라시설을 구축하고,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화를 진흥시키며 혁신을 장려한다.	세계인권선언 19, 25, 27 / 사회권 규약
10. 불평등	목표 10. 국가 내, 국가 간 불평등을 완화한다.	세계인권선언 2, 21, 22 / 사회권 규약 / 발전권 선언
11. 도시	목표 11. 포용적이고 안전하며 복원력 있고 지속가능한 도시와 인간 거주지를 조성한다.	세계인권선언 25, / 사회권 규약 / UN HABITAT 신도시의제(New Urban Agenda, NUA)
12. 생산소비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양식을 확립한다.	세계인권선언 25(1) / 사회권 규약
13. 기후변화	목표 13.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대처하는 긴급 행동을 시행한다*	세계인권선언 25(1) / 사회권 규약 / UN 기후변화협약(UNFCCC)
14. 해양	목표 14.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양, 바다, 해양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하게 사용한	세계인권선언 25(1), / 사회권 규약
15. 육상	목표 15. 육상 생태계를 보호, 복원 및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고,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관리 하며, 사막화를 방지하고, 토지 황폐화를 막고 생물 다양성 감소를 억제한다.	세계인권선언 25(1) / 사회권 규약
16. 거버넌스	목표 16.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평화롭고 포용적인 사회를 건설하고, 사법 정의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며, 모든 차원에서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포용적인 제도를 구축한다.	세계인권선언 3, 5, 6, 8, 19, 21 / 자유권 규약 (ICCPR) / 아동권리협약(CRC) / 고문방지협약 (CAT) / 인종차별철폐협약(ICERD) / 장애인권리협약 (CRPD) / 부패방지협약(UNCAC)
17. 이행수단	목표 17. 이행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대한다.	세계인권선언 12, 27(1), 28, / 발전권 선언

상자 1> SDG 16번 목표의 12개 세부목표와 인권 연계

핵심단어	세부목표	국제인권기준 및 제도 (예시)
폭력	16.1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폭력 및 관련 사망률을 상당히 감축	시민정치적권리 국제규약 (ICCPR)
아동폭력	16.2 아동에 대한 학대, 착취, 매매 및 모든 형태의 폭력과 고문 종식	아동권리협약(CRC)
법치와 사법정의	16.3 국가적·국제적 수준에서 법치를 증진하고, 모두에게 정의에 대한 평등한 접근 보장	시민정치적권리 국제규약 (ICCPR) 베니스위원회 국제개발법기구(IDLO)
불법 범죄	16.4 2030년까지 불법 자금 및 무기 유출입을 상당히 감축하고, 도난자산 회수 및 반환을 강화하며, 모든 형태의 조직범죄를 방지	
부정부패	16.5 모든 형태의 부패 및 뇌물을 상당히 감축	유엔반부패협약(UNCAC)
민주적 제도	16.6 모든 수준에서 효과적이고 책임 있으며 투명한 제도 개발	시민정치적권리 국제규약 (ICCPR)
민주적 의사결정	16.7 모든 수준에서 반응하고, 포용적이고, 참여적이며, 대표성 있는 의사결정 보장	시민정치적권리 국제규약 (ICCPR)
글로벌 거버넌스	16.8 개도국의 국제 거버넌스 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강화	유엔 발전권 선언
아동인권	16.9 2030년까지 출생신고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법적 정체성 부여	아동권리협약(CRC)
알권리 (정보접근)	16.10 국내법과 국제협약에 따라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을 보장하고 근본적 자유를 보호	열린정부파트너십(OGP)
국제협력	16.a 모든 수준에서, 특히 개도국에서 폭력을 예방하고 테러리즘과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을 배양하도록 국제협력 등을 통하여 관련 국내 기관을 강화	
비차별	16.b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차별적 법과 정책을 증진하고 시행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표 9> 인권과 SDGs 비교 - 규범, 제도 및 이행

	인권	SDGs
주요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 (1948) 9대 주요 인권조약 (1965-현재) 주요 인권관련 선언 발전권 선언 (1986) 비엔나 2차세계인권회의(1993)	스톡홀름 인간환경회의 (1972) 리우 환경회의 (1992) 코펜하겐 사회발전정상회의 (1995) Millennium Summit (2000) 새천년개발목표(MDGs) (2002) 리우+10 (2002) 리우+20 (2012) Addis Ababa Action Agenda (AAAA) (2015) UN 2030 Agenda for SD (2015) UNFCCC (2015)
주요 원칙	보편성, 상호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	포용성, 보편성, 변혁성, 통합성, 포괄성, 책무성 등
유엔 사무국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제네바	UN 경제사회국(DESA), 뉴욕
UN 이행 제도 및 절차	9대 조약기구(Treaty Body)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 보편적정례검토(UPR) 포럼 (소수자, 사회권, 기업과 인권, 법치와 민주주의)	UN 고위급정치포럼(HLPF) 자발적국별보고(VNR) UN 개발협력포럼(DCF) UN 개발자원포럼(FfD Forum) UN 전문기구 및 프로그램
국가간 갈등 구도	서구 - 비서구 / 선진국 - 개도국	선진국-개도국
국가별 이행 보고	UPR (약 3시간, 4년반) 개별 인권조약기구 (약 9시간, 4-5년)	자발적국별보고(VNR) (15분, 4년 마다)
시민사회	NGO	9대 이해관계자 그룹 (Major Group) - 노동, 농민, 원주민, 아동청년, 여성, NGO, 과학기술, 기업, 지자체
국제 이행보고 관련 NGO 역할	사전 서면의견 제출 심의중 참관만 (발언 기회 없음) 권고안 채택회의 때 발언 가능	사전 국내의견 수렴 및 반영 심의 중 발언 가능 (2분)
국내제도 - 주무 부처	법무부 국가인권정책협의회	환경부 (국내 이행) 외교부 (국제 및 개도국 이행 지원) UN Development Assistance Framework (DAF) 개도국 경우
국내 제도 - 위원회	국가인권위 (독립)	지속가능발전/ SDGs 위원회? (대통령/국무총리 산하)
국내정책	3차 국가 인권정책기본계획(NAP) (2017-2022)	SDGs 이행 국가행동계획(NAP) (2018-2030) 수립 예정
주요 시민사회 전략	Naming & Shaming	직접 실행 (Service delivery) / Naming & Shaming 거버넌스 참여 / 파트너십 참여

SDGs와 인권

인권	SDGs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SDG 1 (빈곤), 2 (기아), 3 (건강), 4 (교육), 6 (식수), 8 (일자리) 등.
시민정치적 권리	SDG 16 번 세부목표 16.3 (법치), 16.10(알권리와 기본적 자유), 등.
평등과 비차별	SDG 5 (성평등), 10 (소득 및 경제적 불평등), 4.7 (성평등 교육), 16.b (비차별 법과 정책)
인권 교육	SDG 세부목표 4.7 (세계시민교육, 인권 등)
기업과 인권	2030 의제 제67항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Guiding Principles on BHR),

인권관점에서 본 SDGs

가. 긍정적 평가

- 첫째, SDGs 제정 과정과 결과에 인권의 주요 원칙 -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등 - 이 적절히 반영
- 있다. SDGs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보편성), 경제사회문화 및 환경적 권리(1-15번)와 시민정치적 권리(16번)이 연계 통합되어 있고 (불가분성) 그리고 지속가능발전과 평화, 민주주의, 인권, 거버넌스(16번)와의 상호연관성이 강조되고 있다.
- 둘째, 참여의 원칙이 어느 정도 반영
- 셋째, 인권교육이 세부목표 (4.7)로 기업과 인권 관련 규범과 아동권리협약 (67항목)이 명시적으로 언급

나. 인권관점에서 본 SDGs의 한계

- 첫째 법적 구속력 부재이다.
- 둘째, 책무성이 여러 곳에서 선언적으로 언급, 구체적 실행 메커니즘 없이 (예: 초국적 기업 관련 국가의 역외관할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 ETO), 그리고 개발 관련 국제기구 (세계은행 등) 와 국제무역협정의 인권책무성에 대한 언급 없음)
- 셋째, 취약한 이행 모니터링 관련 국제인권 메커니즘과의 연계 및 통합 (국제적으로는 유엔 인권기구의 이행 모니터링 제도-조약기구, 특별절차, 보편적정례검토(UPR) 등, 국내적으로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 이하 NAP)와 SDGs 이행 계획과의 연계 불분명)

학자 또는 기관	빈곤의 이해와 정의
아마티야 센	빈곤은 권리의 박탈로 기본적 자유 즉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태
세계은행	직업, 생산수단 소유, 저축과 같은 물질적 재화와 기회의 부족뿐만 아니라, 건강, 신체의 보전, 공포와 폭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소속감, 문화적 정체성, 조직력,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능력, 그리고 존중 받고 존엄 있는 삶을 영위할 능력과 같은 신체적 및 사회적 재화의 부족 상태
UN 사회권 규약 위원회 (CESCR)	적절한 생활수준과 시민적, 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수적인 자원, 역량, 선택권, 안전, 권한 등이 지속적이고 만성적인 박탈되는 인간의 조건
OECD 개발원조위원회 (DAC)	경제적, 인간적, 정치적, 사회문화적 및 보호적 역량이 박탈된 상태

<상자 2> 스템포드 공통이해(Common Understanding)

1. 모든 개발 협력, 정책, 기술 지원의 프로그램들은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장치들에 명시된 인권의 실현을 증진시켜야 한다.
2. 세계인권선언과 다른 국제 인권 문서에 담긴 기준과, 이로부터 도출되는 원칙들은, 모든 분야와 모든 개발협력 프로그래밍 과정의 단계에서 모든 개발협력과 프로그래밍을 이끌어야 한다.
3. 개발 협력은 '의무 부담자'가 자신들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 보유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스탬포드 공통이해의 HRBA의 13가지 특성

1. 참여하는 주민은 재화나 서비스의 수동적인 수혜자라기보다는, 자신 스스로의 발전에 있어 주요 행위자로서 인식해야 한다.
2. 참여는 수단이자 목적이다.
3. 전략은 사람들을 무력화(disempowering)가 아니라 자력화(empowering)한다.
4. 결과와 과정 모두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5. 분석에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6. 프로그램은 사회에서 소외되고, 혜택을 받지 못하고, 배제된 그룹들에 초점을 맞춘다.
7. 현지 지역사회와 주민이 개발과정에서 주인의식을 가진다.
8. 프로그램은 불균형/불평등(disparity) 감소를 목표로 한다.
9. 시너지 효과를 위해서 하향식 그리고 상향식 접근 방법을 모두 사용한다.
10. 빈곤퇴치/개발 관련 문제에 대한 상황분석을 통해 즉각적, 근본적 그리고 기본적인 원인들을 규명한다.
11. 프로그래밍에서 측정 가능한 목표와 세부목표를 중요하게 다룬다.
12.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유지한다.
13. 프로그램은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책무성을 지원한다.

인권기반접근(HRBA)의 실행 원칙: PANEL

UN OHCHR이 2005년 발간한 “빈곤감소 전략에 대한 인권적 접근 - 원칙과 가이드라인”

- 참여(Participation)
- 책무성(Accountability)
- 비차별(Non-Discrimination)
- 자력화(Empowerment) 그리고
- 인권기준과의 연계 (Linkages to human rights standards)

1. 이행단계에 따른 인권 연계

첫째, SDGs 이행 제도화 단계에서 정부 내 인권을 담당하는 부처와 기관의 참여 (예: 국내에서 인권을 총괄하는 법무부와 인권외교를 담당하는 외교부,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등)

둘째, 시행계획과 정책 차원에서 한국정부의 NAP와 SDGs 국내 및 국제이행이 유기적으로 연계 (예: 제3차 NAP(2017-2021)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모니터링과 평가 역할)

셋째, 모니터링과 평가 및 환류 단계에서 SDGs를 인권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 (예: 통계청과 협력하여 인권통계 기반을 구축, 인권기반 모니터링 지표 개발, 인권영향평가 실시 등)

넷째, SDGs 이행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과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인권교육 시행 (예: 인권 감수성과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인권기반 개발협력사업 프로그래밍 등 직무 관련 인권교육과 훈련, 세계시민교육과 인권교육을 다루는 SDG 세부목표 4.7과 역량강화를 다루는 세부목표 17.9 등)

2. 목표에 따른 인권 연계

첫째 세부목표와 목표 차원에서의 인권 연계 (예: 다양한 국제인권기준-조약과 선언, 원칙, 가이드라인 등- 특히 9대 조약기구 위원회와 UPR의 국별 권고안, 그리고 유엔 HRC 인권 특별절차 보고관의 보고서와 권고안)

둘째, 5개의 그룹으로 집단의 인권과 연계 (예: 발전권, 평화권, 환경권,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국제연대의 권리 등)

셋째, 내용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목표와 세부목표를 묶어서 접근하는 이른바 넥서스 접근 (예: 에너지(7번)와 물(6번)을 기후변화와 연계, 식량(2번), 건강(3번), 물(6번),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12번)과 연계 등)

넷째 인권 실현의 조건인 평화와 민주주의, 반부패와 투명성 등 인권기반 거버넌스 증진을 위한 체계적 노력 강화 (예: 16번 목표)

3. 이행 주체에 따른 인권 연계

가. 다자간 이해관계자 파트너십

- 정부-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 (PPCP)
- 세부목표 17.17. 파트너십의 경험과 재원조달 전략을 바탕으로, 효과적인 공공·공공-민간·시민사회 파트너십 (Public, public-private and civil society partnerships, PPCP)을 장려하고 증진한다
- 주요 그룹(Major Group)은 크게 시민사회적 성격이 강한 여성, 노동자, 농민, 원주민, 아동과 청년 그리고 NGO 등 여섯 그룹과 기업, 지자체, 과학기술계로 구성.

첫째, 시민사회에 속하는 6개 주요그룹 구성원 (인권옹호자)

둘째 기업 (예: 기업과 인권에 대한 이행원칙 (UNGPs)과 아동권리협약(CRC) 2030 의제 제67항) - 개발협력연대(Development Alliance Korea, DAK) 참여 기관 대상 인권교육
기업과 인권은 올해 7월 독일 함부르크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 선언문에는 책임있는 공급망 관련하여 UNGPs와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을 처음으로 포함하였다(G20, 201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 이하 KOTRA) 인권경영 KOICA, KOTRA 그리고 수출입은행 등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도입

셋째, 지자체의 (예: 광주시 세계인권도시포럼(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HRCF)과 유엔 '지방정부와 인권(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보고서)

넷째, 과학기술계와 직접적 연관되는 세부목표 17.6, 17.7 및 17.8

SDGs 이행 주요 그룹과 국제인권 규범 연계

주요 그룹	목표 (예시)	국제 인권기준과 의제
여성 Women	5번 등	여성차별철폐협약(CEDAW, 1979)
아동과 청년 Children and Youth	5번 등	아동권리협약(CRC, 1990)
원주민 Indigenous Peoples	2번, 4번 등	유엔 원주민권리선언(UNDRIP, 2007)
농민 Farmers	2번 등	농민의 권리 선언 초안
노동자와 노동조합 Workers and Trade Unions	8번 등	ILO 핵심노동기준
비정부기구 (NGOs)	모든 목표	인권옹호자 선언(1998)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2000)
산업계와 기업 Business and Industry	9번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 2011) OECD 다국적기업(MNE) 가이드라인 (2011)
지자체 Local authorities	11번,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지방정부와 인권 보고서
과학 및 기술계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mmunity	9번	

V. 전망

문재인 정부의 국가비전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과 100대 국정과제는 결과적으로 SDGs와 내용에서 상당히 부합.

"문재인 정부의 외교정책 비전은 '평화, 민주주의 및 인권'을 핵심가치로 삼고, '국민외교, 공공외교, 협력외교' 전략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책임이 있는 글로벌 중견국가로서 안보와 분쟁, 인권, 기후변화, 불평등 등 지구적 위기와 도전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보다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평화로운 동북아시아와 글로벌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이미경 코이카 12대 이사장 취임사 (2017년 11월 29일))

인권기반접근을 통한 SDGs 이행은 큰 기회이자 과제